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심 의 · 의 결

안건번호 제2019 - 41 - 229호

안 건 명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이사

의 결 일 2019. 8. 23.

주 문

1. 피심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제1항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실시결과를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
 - 가. 과 징 금 : 4,300,000원
 - 나. 과 태 료 : 5,000,000원



- 다.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 라.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 마.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52조, 제53조제1항 및 제54조에 따라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

이 유

I. 기초 사실

(이하 '피심인'이라 한다)는 영리를 목적으로 골프용품 판매 사이트()를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고, 피심인의 일반현황 및 최근 3년간 매출액은 다음과 같다.

< 피심인의 일반현황 >

대표자	설립일자	자본금	주요서비스	종업원 수

< 피심인의 최근 3년간 매출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평균
매출액				

※ 자료 출처 :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

II.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대상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에 대한 개인정보 취급·운영 실태를 현장조사(2018. 8. 13.)하였고,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골프용품 판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018. 8. 13. 기준으로 건의 회원정보를 보관하고 있다.

<참고 1> 피심인의 개인정보 수집 현황

구 분	항 목	수집일	건수
유효회원	(필수) 이름,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일반전화번호 (선택) 주소, 성별, 생년월일		
휴면회원	상동		

나. 개인정보 유출 규모 및 경로

(1) 개인정보 유출규모

피심인이 골프용품 판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수집한 회원의 개인정보 7,520건이 유출되었다.

<참고 2> 피심인의 개인정보 유출 현황

구 분	유 출 항 목	건 수
회원	아이디, 이름,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일반전화번호, 주소, 생년월일, 성별	7,520건

(2) 유출 경로

미상의 해커가 2018. 7. 10. 23:24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획득한 관리자계정으로 관리자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정보를 엑셀파일 형태로 다운로드 함으로써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3) 유출 인지 및 대응

피심인은 2018. 7. 16. 피심인의 쇼핑몰 제작사인 로부터 1:1 문의게시판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안내를 받고 같은 날 이용자에게 유출사실을 이메일과 문자로 통지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 포털(i-privacy.kr)에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하였다.

3.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 사실 관계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부여 등 접근통제{정보통신망법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중 접근통제}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개인정보취급자가 외부 인터넷망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관리자페이지)에 접속 시 아이디, 비밀번호 외에 추가적으로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나.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방송통신위원회는 2019. 2. 26.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 시정조치(안) 사전 통지 및 의견 수렴' 공문을 통하여 이 사건에 대한 피심인의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019. 3. 13. 의견을 제출하였다.

III.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 통제장치의 설치·운영(제2호)’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은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시스템(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 등에 관한 기준의 수립·시행(제1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항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5조제6항에 따라 위 기준 수립·시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5-3호, 이하 ‘고시’라 한다) 제4조제4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시 해설서’는 고시 제4조제4항에 대해 인터넷 구간 등 외부로부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차단하여야 하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업무 특성 또는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취급자가 노트북, 업무용컴퓨터, 모바일기기 등으로 외부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이 필요할 때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사용자계정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정당한 개인정보취급자 여부를 식별·인증하는 절차 이외에 추가적으로 인증서(PKI, Public Key Infrastructure), 보안토큰(암호 연산장치 등으로 내부에 저장된 정보



가 외부로 복사, 재생산 되지 않도록 공인인증서 등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수단으로 스마트카드, USB 토큰 등이 해당), 일회용 비밀번호(OTP, One Time Password) 등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다.

나. 정보통신망법 제64조제3항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원에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해당 법 위반 사실과 관련한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상황,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정보통신망법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중 접근통제)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이 피심인의 개인정보취급자가 외부 인터넷망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관리자페이지)에 접속 시 아이디, 비밀번호 외에 추가적인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은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제1호, 고시 제4조제4항을 위반한 것이다.

< 피심인의 위반사항 >

사업자 명	위반 내용	법령 근거		
		법률	시행령	세부내용(고시 등)
	접근 통제	§28①2호	§15②1호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 시 단순히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을 이용토록 하고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아니한 행위(고시§4④)

IV. 시정조치 명령

1. 시정명령



피심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시정명령 이행결과의 보고

피심인은 제1항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실시결과를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V. 과징금 부과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같은 법 제64조의3 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2제1항과 제4항 [별표 8] (과징금의 산정 기준과 산정절차) 및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5-30호, 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1. 과징금 상한액 및 기준금액

가. 과징금 상한액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한 과징금 상한액은 같은 법 제64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2에 따라 위반행위와 관련된 정보통신서비스의 직전 3개 사업년도의 연평균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나. 기준금액

1) 고의·중과실 여부



과징금 부과기준 제5조제1항은,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별표 8] 2. 가. 1)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판단기준 중 고의·중과실 여부는 영리목적의 유무,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상의 해커가 피심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관리자페이지에 접속하여 이용자 개인정보를 탈취하였으나, 만일 피심인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추가적인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였더라면 이용자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판단한다.

2) 중대성의 판단

과징금 부과기준 제5조제3항은, 위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고의·중과실이 있으면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과징금 부과기준 제5조제3항 단서조항은, 위반행위의 결과가 ▲위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위반행위로 인해 직접적으로 이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제1호), ▲위반행위로 인한 개인정보의 피해규모가 위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100분의 5 이내인 경우(제2호),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공중에 노출되지 않은 경우(제3호) 중 모두에 해당할 때에는 '보통 위반행위'로, 1개 이상 2개 이하에 해당할 때에는 '중대한 위반행위'로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심인의 위반행위의 결과가 ▲위반행위로 인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피해규모가 피심인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100분의 5를 초과하고(7,520명의 회원리스트를 엑셀파일로 다운로드),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공중에 노출되었지만, ▲위반행위로 인해 직접적으로 이득을 취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한다.

3) 기준금액 산출



가) 관련매출액

피심인의 이용자 개인정보가 유출된 홈페이지() 매출액에서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 제공년도('18년도)의 직전 3개 사업년도인 '15년도~'17년도의 연평균 매출액 원을 관련 매출액으로 산정한다.

(단위 : 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3년 평균
전체 매출				
관련 매출				

※ 자료 출처 : 피심인이 제출한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

나) 기준금액

관련매출액에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별표 8] 2. 가. 1)에 따른 '중대한 위반행위'의 부과기준을 1천분의 21을 적용하여 기준금액을 원으로 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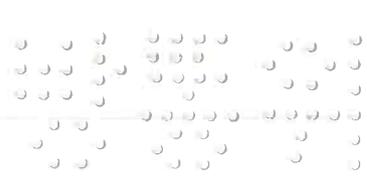
< 시행령 [별표8] 2. 가. 1)에 따른 부과기준율 >

위반행위의 중대성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1천분의 27
중대한 위반행위	1천분의 21
보통 위반행위	1천분의 15

다. 필수적 가중·감경

'과징금 부과기준' 제6조와 제7조에 따라 피심인의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시점이 '18. 7. 10.이고 위반행위가 조치된 시점은 '18. 8월로 위반행위 기간이 1년 이내로 기준금액을 유지하고, 최근 3년간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적이 없어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원을 감경한다.

라. 추가적 가중·감경



과징금 부과기준 제8조에 따라 위반행위 주도여부, 조사 협력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나 특별히 가중할 사유는 없으며, 방통위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원을 감경한다.

마. 최종 과징금

이에 따라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 4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3에 의한 과징금 산출내역 >

기준금액	필수적 가중·감경	추가적 가중·감경	최종과징금*
원	필수적 가중 없음 필수적 감경 (50%, 원)	추가적 가중 없음 추가적 감경 (20%, 원)	430만원
	→ 원	→ 원	

*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산정 실무요령'에 따라 최종 과징금 산출액이 1억원 미만은 십만원 미만 절사, 1억원 이상은 백만원 미만 절사함

VI.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제1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6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 [별표9] 및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의 보호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지침」(이하 '과태료 부과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별표 9]와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이번 피심인의 위반행위가 첫 번째에 해당하므로 1회 위반 과태료인 1,000만원을 적용한다.

〈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 〉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만원)		
		1회	2회	3회 이상
너. 법 제28조제1항(법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 제1항제3호	1,000	2,000	3,000

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는 ▲증거인멸, 조작, 허위의 정보 제공 등 조사방해, ▲위반의 정도,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 특별히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과태료를 가중하지 않는다.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는 ▲당사자 환경, ▲사업규모와 자금사정, ▲개인(위치)정보보호 노력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안)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 내에 시정이 완료된 점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인 500만원을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이에 따라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과태료 산출내역 >

위반조문	기준금액	가중	감경	최종 과태료
§28①2호	1,000만원	없음	500만원	500만원

Ⅶ. 결론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64조제4항(시정명령), 제64조의3제1항제6호(과징금) 및 제76조제1항제3호(과태료)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 또는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9년 8월 23일

위원장	이 효 성	
부위원장	김 석 진	
위원	허 욱	
위원	표 철 수	
위원	고 삼 석	

